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신혜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스물한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에 동참해 주신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이력서상 사진 부착과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의 기재 요구 금지사항을 규정하여,

기초심사자료에 대한 제한을 통해 직무수행과 상관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